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04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	2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3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인 자녀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해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1)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60조제6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생 략)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⑥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3. -----

1)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u>립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9조 제1항에 따른 <u>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u> ⑦ (생 략)	----- -----<u>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u> ⑦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①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③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²⁾

그러나 학생인 자녀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해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도 출산전후휴

2)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행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휴가로 내부 지침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따른 법률 개정의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9